

의안번호	제 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공용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(영구시설물 축조)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3. 7.

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(영구시설물 축조)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3. 7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- 가. 최근 중앙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따라,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므로 이에 대응한 충전시설 확충 필요
- 나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친환경 자동차법’)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5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)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차장(주차면 50면 이상)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
- 다.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에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군의회에 동의가 필요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본현황

- 1) 주차장명: 고성공룡시장 공영주차장(63면)
- 2) 위 치: 고성읍 성내리 239 외(2,282m²)
- 3) 준 공 일: 2021. 5. 11.
- 4) 관리형태: 고성공룡시장상인회 관리위탁
 - 1년 단위 위탁계약(2024. 1. 1. ~ 2024. 12. 31.)

나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: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
- 2) 설치장소: 고성공룡시장 공영주차장
- 3) 추진방식: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민간사업자 시설물 설치
- 4) 사업자: 친환경 충전시설을 보급하려는 민간사업자
- 5) 주요시설: 급속충전기(50Kw) 1대, 완속충전기(7Kw) 1대,
부속시설(캐노피, 분전반, 계량기) 설치
- 6) 현황도



다. 운영방법

- 1) 운영주체: 민간사업자
- 2) 운영기간: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10년(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)
- 3) 허가조건: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업자 원상복구
- 4) 운영범위: 전기차 충전서비스(설치 포함)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
3. 향후계획

- 가. 2024. 3. :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(영구시설물) 설치 공의
- 나. 2024. 4. 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계약
- 다. 2024. 4. ~ :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

4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 -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- 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해당 동의안은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인 고성공룡시장 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내용에 대한 동의 사항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경제기업과장 강도영

□ 친환경자동차법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

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□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

제18조의5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) 법 제1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,

이하 “총주차대수”라 한다)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·보급계획·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3.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